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1450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민호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무

2. C

변론 종결2021. 9. 8.

판결 선고2021. 11.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9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은 97,1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9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D의 부탁으로 2016.경부터 2017. 9. 25.까지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113,37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D에게 차용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으로 미변제한 차용금 97,1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D이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D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차용금을 일상가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 B은 D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D은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D이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이 사건 청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매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7,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6.경부터 2017. 9. 25.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약 113,3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D은 2017. 9. 20. 4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0. 8. 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고, 2017. 10.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7. 11. 9.

1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처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19. 4. 20.

1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위 차용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9.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과 피고 B은 2007. 11. 5. 혼인을 하였다가 2019. 8. 20. 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D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서명한 사실, D이 다단계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E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고 B과 협의 없이 피고 B의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20. 11. 18. 기소된 사실, D은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 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B은 몰랐다',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못 갚고 있는데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되어 피고 B도 D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E에게만 돈을 빌렸다가 F에게 빌려 E의 이자나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후 이영한테 돈을 빌리다가 사채업자인 원고를 소개받아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돈이 급해서 피고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얘기하고 돈을 빌렸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 D이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주로 사용하여 돈을 빌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나) 가사 D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D에게 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을 한 점,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13,37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배우자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D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차용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D의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의 표현대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 B이 D의 차용행위를 알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 B이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D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D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D과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가액반환청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과 피고 B

사이에 D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윤아

별지